



제438회국회(임시회)
제1차 행정안전위원회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자동화프로그램 등을 사용한 글영상 등의 대량
게시·전송 금지 등〉

■ 광규택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17082호)

2026. 8.

행 정 안 전 위 원 회
전 문 위 원 황 승 기

목 차

I . 제안경위	1
II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 검토의견	3

I. 제안경위

1. 제 안 자 : 광규택의원 등 10인
2. 제 안 일 : 2026. 2. 26.
3. 회 부 일 : 2026. 2. 27.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할 목적으로 매크로 등 자동화프로그램 등을 이용하여 인터넷게시판 등에 게시글, 댓글 등을 반복·대량으로 게시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음.

그런데 최근 선거과정에서 매크로 등 자동화프로그램 등을 이용하여 특정 정당 또는 후보자에 유리한 방향으로 댓글을 대량 작성하거나 추천·비추천 등 반응지표를 조작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 이러한 행위는 유권자의 자유로운 판단을 방해하고, 민주적 선거질서를 훼손하는 새로운 유형의 선거범죄로서 명시적인 처벌규정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선거기간 중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에게 유리 또는 불리하게 할 목적으로 자동화프로그램을 이용하여 게시글 또는 반응지표를 대량으로 게시·입력하는 행위 등을 금지하고, 그 위반자에 대한 처벌

규정을 마련하는 한편, 각급선거관리위원회가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에게 접속기록 등 자료의 열람·제출을 요청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자동화프로그램을 통한 여론조작 행위를 방지하고, 선거의 공정성을 확보하려는 것임(안 제82조의4제7항 및 제8항 신설 등).

Ⅲ. 검토의견

개정안은 선거기간 중 자동화프로그램을 이용한 여론 조작 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한 자에 대한 처벌 규정을 마련하는 한편, 각급선거관리위원회에 접속기록 등 자료의 제출을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에게 요청할 수 있는 근거를 규정하려는 것임.

현행법은 당선되거나 되게 할 목적으로 후보자 등에게 유리하도록 허위의 사실을 게시하거나, 반대로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후보자 등에게 불리하도록 허위의 사실을 게재·공표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음(법 제250조제1항 및 제2항).¹⁾

그런데, 유권자는 특정 허위사실의 유포뿐만 아니라, 해당 정보에 대한 다수의 동조 여부에 따라 판단을 수정하는 경향이 있으며,²⁾ 이러한 여론의 쏠림 현상이 실제 투표 행위로 이어질 가능성도 있음.

1) **법 제250조(허위사실공표죄)** ① 당선되거나 되게 할 목적으로 연설·방송·신문·통신·잡지·벽보·선전문서 기타의 방법으로 후보자(候補者가 되고자 하는 者를 포함한다. 이하 이 條에서 같다)에게 유리하도록 후보자, 후보자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나 형제자매의 출생지·가족관계·신분·직업·경력등·재산·행위·소속단체, 특정인 또는 특정단체로부터의 지지여부 등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학력을 게재하는 경우 제6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방법으로 게재하지 아니한 경우를 포함한다]을 공표하거나 공표하게 한 자와 허위의 사실을 게재한 선전문서를 배포할 목적으로 소지한 자는 5년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연설·방송·신문·통신·잡지·벽보·선전문서 기타의 방법으로 후보자에게 불리하도록 후보자, 그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나 형제자매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을 공표하거나 공표하게 한 자와 허위의 사실을 게재한 선전문서를 배포할 목적으로 소지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 심리학자 솔로몬 애쉬(Solomon Asch)는 피험자에게 실험의 목적이 시력 검사라고 알려주고, 여러 명의 실험 조력자들과 함께 앉게 한 후, 서로 다른 길이의 선들을 보여주고 표준선과 같은 길이의 선을 고르는 문제를 수차례 실험하였음. 실험조력자들이 피험자에 앞서 모두 오답을 선택하기를 반복하자, 실험이 거듭될수록 피험자도 결국 주변에 동조하여 오답을 선택하는 모습을 보임. 전체 응답의 약 40%에서 피험자는 다수의 오답에 동조하였으며, 약 75%의 피험자가 최소 한 번 이상 오답에 동조하는 모습을 보였음. 한국심리학신문, “솔로몬 애쉬의 동조 실험의 후속 연구: 단 한 사람만 있다면”, 2026.5.19.

이를 고려할 때, 자동화프로그램을 이용하여 특정 후보에 대한 유리 또는 불리한 게시물을 다수 게재하여 여론을 조작할 경우 선거결과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나, 현행법에는 이에 대한 금지 및 처벌 규정이 없는 상황으로, 이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개정안은 선거기간 중 자동화프로그램을 이용한 여론 조작 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한 자에 대한 처벌 규정을 마련하는 한편, 각 급선거관리위원회에 접속기록 등 자료의 제출을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에게 요청할 수 있는 근거를 규정하려는 것임.

《 개정안의 내용 》

구분	개정안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선거운동 (법 제82조의4)	○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에게 유리 또는 불리하게 할 목적으로 자동화 프로그램 등을 이용한 다음의 행위 금지(제82조의4제7항 신설) - 인터넷 등에 유사한 내용의 글이나 동영상 등을 대량으로 게시·전송하는 행위 - 인터넷 등에 게시된 글이나 동영상 등에 대한 추천·비추천 또는 동의·비동의 등의 표시를 대량으로 입력하는 행위 ○ 상기 행위에 대한 지시·권유·요구·알선 금지(제82조의4제8항 신설)
통신관련 선거범죄의 조사 (법 제272조의3)	○ 제82조의4제7항 또는 제8항을 위반한 행위의 혐의가 있다고 인정되는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 각급선거관리위원회 직원이 당해 선거관리위원회 소재지 관할 고등법원 수석판사 또는 이에 상당하는 판사의 승인을 얻어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에게 접속기록·이용기록·접속경로·비정상 접속패턴 등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하는 자료의 열람이나 제출을 요청할 수 있음(제272조의3제2항 신설)
부정선거운동죄 (법 제255조)	○ 제82조의4제7항 위반 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600만원 이하의 벌금 ○ 제82조의4제8항 위반 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원 이하의 벌금

※ 관련 법 규정 등을 참고하여 작성

이를 통해 실제로는 소수의 의견이 다수의 목소리인 것처럼 과잉대표되는 일을 방지할 수 있고, 결과적으로 유권자의 민의가 대표자의 선출 등 정치과정에 보다 정확히 반영될 가능성을 높일 수 있다는 점에서 개정안의 취지는 바람직하다고 보임.

이와 관련하여 영국, 유럽연합 등에서 자동 생성 유해 콘텐츠 및 댓글 차단 의무화 내용을 담은 법률을 제정·시행한 사례가 존재한다는 점을 참고할 필요가 있음.

《 자동댓글 생성 방지 기술 적용 의무화 해외 도입 사례 》

국가명	주요내용	비 고
영국	- 온라인 안전법(Online Safety Act) - 소셜미디어 플랫폼에 자동 생성된 유해 콘텐츠 식별 및 차단 기술 의무화, 투명성 보고 강화 - 전반적인 시스템 구축을 하지 않아 중대한 불법/유해 콘텐츠 유통을 방조한 경우 경영진 개인에게 형사책임 부과	2023년 제정
유럽연합	- 디지털 서비스법(Digital Services Act) - 플랫폼 사업자에게 봇(Bot)을 이용한 여론조작 또는 댓글확산과 같은 시스템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합리적인 기술적·절차적 조치 의무 부과 - 의무 불이행시 전 세계 연간 매출액의 최대 6%를 과징금으로 부과	2024년 전면 시행
싱가포르	- 온라인 허위 정보 및 조작 방지법(POFMA) - 봇(Bot)이나 가짜 계정을 사용하여 고의로 공익을 해치는 허위 정보(조작 정보)를 퍼뜨릴 경우 일반적인 허위 정보 유포보다 가중처벌함 - 플랫폼은 정부의 삭제 또는 정정명령에 불응할 경우 행정벌 성격의 벌금 부과	2019년 제정

※ 출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제출 자료를 토대로 재가공

다만, 각급선거관리위원회에게 접속기록 등 자료의 제출을 정보통신서비스사업자에게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하려는 것과 관련하여, 제출대상이 “접속기록, 이용기록, 접속경로, 비정상 접속패턴 등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하는 자료”로 다소 포괄적으로 설정되어 있는바, 이와 같은 자료들을 수집·보관할 의무를 부과하는 경우 정보통신서비스사업자에게 과도한 부담이 될 수 있다는 의견도 있음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³⁾

선거범죄의 조사를 위한 정보제공의 범위와 관련하여, 법 제272조의 3제1항이 각급 선거관리위원회의 열람·제출요청의 대상이 되는 통신자료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으면서도, 그 범위를 명확히 한정(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이용기간, 이용요금)하고 있다는 점을 참고할 수 있을 것임.

3) 또한 자동화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동일 또는 유사한 게시글을 대량으로 게시하는 행위는 게시판 외관상 곧바로 드러나므로 해당 위반 혐의자의 경우 현행법 제272조의3제1항에 따른 이용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등의 정보를 통해 충분히 특정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므로, 개정안에 따른 추가 자료 제출은 필요하지 않을 수 있다는 점도 고려할 필요가 있을 것임.

《 현행법 제272조의3제1항과 개정안 제272조의3제2항의 비교 》

현행법	개정안
제272조의3(통신관련 선거범죄의 조사) ① 각급선거관리위원회(읍·면·동선거관리위원회를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직원은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이 법 위반행위의 혐의가 있다고 인정되는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당해 선거관리위원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등법원(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의 경우에는 지방법원을 말한다) 수석판사 또는 이에 상당하는 판사의 승인을 얻어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당해 정보통신서비스 이용자의 <u>성명(이용자를 식별하기 위한 부호를 포함한다)·주민등록번호·주소(전자우편주소·인터넷 로그기록자료 및 정보통신망에 접속한 정보통신기기의 위치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포함한다)·이용기간·이용요금에 대한 자료의 열람이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u> <신 설> ② (생 략)	제272조의3(통신관련 선거범죄의 조사) ① (현행과 같음) ② 각급선거관리위원회 직원은 제82조의4제7항 또는 제8항을 위반한 행위의 혐의가 있다고 인정되는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당해 선거관리위원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등법원(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의 경우에는 지방법원을 말한다) 수석판사 또는 이에 상당하는 판사의 승인을 얻어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에게 <u>접속기록·이용기록·접속경로·비정상 접속패턴 등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규칙으로 정하는 자료의 열람이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u> ③ (현행 제2항과 같음)

※ 관련 법 규정 등을 참고하여 작성

따라서 개정안에 대하여는 현행 제도의 장단점, 국민여론, 선거 업무 수행의 현실적 어려움 등에 대한 종합적인 논의를 통해 타당성 여부를 결정할 필요가 있다고 봄.

개정안과 관련하여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어떤 행위를 범죄로 규정하고 처벌 대상과 범위를 어떻게 정할지는 원칙적으로 입법자가 우리의 역사와 문화, 입법 당시의 시대적 상황과 국민 일반의 가치관 내지 법감정, 범죄의 실태와 죄질 및 보호법익 그리고 범죄 예방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할 국가의 입법정책에 관한 사항이며,⁴⁾

개정안의 입법화 여부는 선거의 공정성 보장의 필요성, 표현의 자유 보장의 필요성, 우리의 정치문화 및 국민 법감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할 사항이라는 입장임.

또한 한국인터넷기업협회는 각급선거관리위원회 직원이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에게 통신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하는 것과 관련하여 그 범위가 “접속기록, 이용기록, 접속경로, 비정상 접속 패턴 등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하는 자료”로 폭넓게 규정되어 있어 최소침해원칙 및 포괄위임금지 원칙 위반 소지가 있고, 해당

4) 헌법재판소 1995.4.20. 선고 91헌바11 결정 요지

어떤 행위를 범죄(犯罪)로 규정하고 이를 어떻게 처벌할 것인가 하는 문제는 원칙적으로 입법자가 우리의 역사와 문화, 입법 당시의 시대적 상황과 국민 일반의 가치관 내지 법감정, 범죄(犯罪)의 실태와 죄질(罪質) 및 보호법익(保護法益) 그리고 범죄예방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할 국가의 입법정책(立法政策)에 관한 사항으로서 광범위한 입법재량(立法裁量) 내지 형성(形成)의 자유(自由)가 인정되어야 할 분야이다. 따라서 어느 범죄(犯罪)에 대한 법정형(法定形)이 그 죄질(罪質)의 경중(輕重)과 이에 대한 행위자의 책임에 비하여 지나치게 가혹한 것이어서 전체 형벌체계상 현저히 균형을 잃게 되고 이로 인하여 다른 범죄자와의 관계에 있어서 헌법상 평등(平等)의 원리에 반하게 된다거나, 그러한 유형의 범죄(犯罪)에 대한 형벌(刑罰) 본래의 기능과 목적을 달성함에 있어 필요한 정도를 일탈함으로써 헌법 제37조 제2항으로부터 파생되는 비례(比例)의 원칙(原則) 혹은 과잉금지(過剩禁止)의 원칙(原則)에 반하는 것으로 평가되는 등 입법재량권(立法裁量權)이 헌법규정이나 헌법상의 제원리에 반하여 자의적으로 행사된 경우가 아닌 한, 법정형(法定形)의 높고 낮음은 단순한 입법정책(立法政策) 당부의 문제에 불과하고 헌법위반의 문제는 아니라 할 것이다.

자료들을 수집·보관할 수 있는 시스템을 추가 마련하는 데 막대한 시간과 비용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며, 개인정보 처리 및 보관에 따른 리스크도 발생할 수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음.

문 의 처
02)6788-5343

참고

현행 및 개정안 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82조의4(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선거 운동) ① ~ ⑥ (생략) <u><신설></u>	제82조의4(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선거 운동) ① ~ ⑥ (현행과 같음) <u>⑦ 누구든지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에게 유리 또는 불리하게 할 목적으로 지정된 명령을 자동으로 반복 입력하는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u> 1.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그 게시판·대화방 등에 동일하거나 유사한 내용의 글이나 동영상 등을 대량으로 게시하거나 전송하는 행위 2.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그 게시판·대화방 등에 게시된 글이나 동영상 등에 대하여 추천·비추천 또는 동의·비동의 등의 표시를 대량으로 입력하는 행위 <u>⑧ 누구든지 제7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지시·권유 또는 요구하거나 알선하여서는 아니 된다.</u> <u>⑨ (현행 제7항과 같음)</u>
<u><신설></u> <u>⑦ (생략)</u> 第255條(不正選舉運動罪)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者는 3年 이하의 懲役 또는 600萬원 이하의 罰金에 處한다.	第255條(不正選舉運動罪) ① ----- ----- ----- -----.

1. ~ 8. (생략)

<신설>

9. ~ 20. (생략)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者는 2年 이하의 懲役 또는 40 0萬원 이하의 罰金에 處한다.

1. ~ 3. (생략)

<신설>

4. ~ 8. (생략)

③ ~ ⑥ (생략)

제261조(과태료의 부과·징수 등) ① ~ ⑤ (생략)

⑥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70조제3항·제71조제10항·제72조제3항(제74조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제73조제1항(관할 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가 제공하는 내용에 한한다) 및 제2항·제272조의3제4항 또는 제275조의 규정을 위반한 자

2. ~ 4. (생략)

⑦ ~ ⑫ (생략)

제272조의3(통신관련 선거범죄의 조사)

① (생략)

<신설>

1. ~ 8. (현행과 같음)

8의2. 제82조의4제7항을 위반한 행위를 한 사람

9. ~ 20. (현행과 같음)

② -----

-----.

1. ~ 3. (현행과 같음)

3의2. 제82조의4제8항을 위반한 행위를 한 사람

4. ~ 8. (현행과 같음)

③ ~ ⑥ (현행과 같음)

제261조(과태료의 부과·징수 등) ① ~ ⑤ (현행과 같음)

⑥ -----

-----.

1. -----

-----제2
72조의3제5항-----

2. ~ 4. (현행과 같음)

⑦ ~ ⑫ (현행과 같음)

제272조의3(통신관련 선거범죄의 조사)

① (현행과 같음)

② 각급선거관리위원회 직원은 제82

조의4제7항 또는 제8항을 위반한 행위의 혐의가 있다고 인정되는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당해 선거관리위원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등법원(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의 경우에는 지방법원을 말한다) 수석판사 또는 이에 상당하는 판사의 승인을 얻어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에게 접속기록·이용기록·접속경로·비정상 접속패턴 등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하는 자료의 열람이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③ (현행 제2항과 같음)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 또는 다른-----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

1. 2. (현행과 같음)

⑤ -----제4항-----

-----.

⑥ -----

제4항-----

-----.

② (생략)

③ 제1항 및 제2항 또는 다른 법률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료의 열람이나 제출을 요청하는 때에는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승인이 필요하지 아니하다.

1. 2. (생략)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요청을 받은 자는 지체없이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⑤ 각급선거관리위원회 직원은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로부터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자료제공을 받은 때에는 30일 이내에 그 사실과 내용을 문서, 팩스, 전자우편,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등으로 해당 이용자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선거

관리위원회에서 고발·수사의뢰한 경우에는 그 불송치결정, 기소 또는 불기소처분을 통지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알릴 수 있다.	----- ----- ----- -----.
⑥ 각급선거관리위원회 직원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자료제공을 받은 경우에는 해당 자료의 제공요청사실 등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대장과 자료제공요청서 등 관련 자료를 해당 선거관리위원회에 비치하여야 한다.	⑦ ----- -----제4항----- ----- ----- ----- ----- -----.
⑦ 각급선거관리위원회 직원은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로부터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라 제출받은 자료가 이 법 위반행위에 대한 조사목적외의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되며, 관계 수사기관에 고발 또는 수사의뢰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된다.	⑧ ----- ----- -----제4항----- ----- ----- ----- -----.
⑧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요청 기타 필요한 사항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한다.	⑨ -----제4항----- ----- -----.